
과업 지시서

『2025학년도 하계 전공학문연계 해외문화탐방 용역』

2025. 3.



명지대학교
MYONGJI UNIVERSITY

제1조(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명지대학교(이하 '갑'이라 함)의 「2025학년도 하계 전공학문 연계 해외문화탐방(이하 '문화탐방'이라 함)」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업체(이하 '을'이라 함)의 업무 범위, 의무 및 준수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갑과 을의 의무) ①을은 갑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 알선, 안내, 운송, 숙박 등 전체적인 여행 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문화탐방 종료 후, 갑은 을의 대금청구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여행 대금을 일괄 지급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을이 선금을 요청하는 경우 갑은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이 경우, 을은 별첨 2~6호 서식, 통장 사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선금 보증 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금 지급 시기는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학생 선발 후 2주 내에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문화탐방 인원) ①갑의 문화탐방 인원(이하 '참가자'라 한다.)은 인솔 교직원을 포함하여 총 42명으로 구성되며, 캠퍼스별 인원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캠퍼스 구분	학생(명)	인솔 교직원(명)	참가자 합계(명)
자연캠퍼스(용인)	20	1	21
인문캠퍼스(서울)	20	1	21
합 계	40	2	42

②다만, 갑의 사정에 따라 참가자 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발생할 경우 갑은 사전에 을에게 통보한다.

③갑이 여행 출발 전 참가자 수 감소를 통보하는 경우, 을은 감소 인원수에 비례하여 여행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로 인해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갑은 아래 표에 명시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배상할 수 있다.

구 분	“을”의 의무	“갑”의 배상범위
여행 출발 30일 전까지(~30) 통보 시	감소 인원수에 비례하여 여행 대금 환급	-
여행 출발 20일 전까지(29~20) 통보 시	상동	위 환급액의 10%
여행 출발 10일 전까지(19~10) 통보 시	상동	위 환급액의 15%
여행 출발 8일 전까지(9~8) 통보 시	상동	위 환급액의 20%
여행 출발 1일 전까지(7~1) 통보 시	상동	위 환급액의 30%
여행 당일 통보 시	상동	위 환급액의 50%

④여행 출발 후 갑이 참가자 수 감소를 통보하는 경우, 을은 감소 인원수에 상응하는 제4조의 문화탐방 경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로 인해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환급되는 문화탐방 경비 범위 내에서 배상할 수 있다.

제4조(문화탐방 경비) ①문화탐방 경비는 다음 각호의 경비가 포함된다.

1. 항공료 일체(왕복 항공료, 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2. 버스 임차비 및 관련 비용(체크포인트 비용, 유류비, 주차비, 통행료 등) 및 기사 관련 비용(기사 팁, 식비, 숙박비, 도시세 등) 등 전용 버스(LDC) 이용에 관한 모든 비용
3. 열차 이용료 일체(유로스타, TGV, 유레일패스 등)
4. 호텔숙박비 일체(조식 비용, 도시세, 부가세 등 호텔 관련 모든 비용)
5. 국외여행인솔자 인건비 일체(항공료, 숙박비, 출장비, 수고료 등)
6. 여행사 수수료
7. 해외여행 보험료(3억 원 한도) 등을 포함한 지상비 일체
8. 참가자 1인당 현지 유심칩(5GB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eSIM 제공

②제1항의 문화탐방 경비에는 참가자의 중식 및 석식 비용, 현지 유료 입장료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각 참가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한다.

③문화탐방 경비는 계약 이후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변경되지 않는다.

제5조(문화탐방 일정) ①문화탐방 일정은 캠퍼스별로 구분하며, 각 문화탐방 기간은 2025년 6월 23일부터 2025년 7월 4일 사이에 출발하여, 출발일로부터 최대 15일 이내로 진행한다.

예) 6월 23일 출발할 경우 → 7월 7일 도착(14박 15일)

예) 7월 4일 출발할 경우 → 7월 18일 도착(14박 15일)

②을은 위 기간 내에서 문화탐방 일정을 기획하여 입찰할 수 있으며, 지역별 세부 일정은 [별첨 1]에 따른다.

캠퍼스 구분	문화탐방 기간
자연캠퍼스(용인) 인문캠퍼스(서울)	2025. 6. 23.~2025. 7. 4. 출발부터 14박 15일

③문화탐방 일정은 [별첨 1]에 명시된 일정의 역순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

④각 캠퍼스 팀은 별도의 팀으로 운영되며, 각 캠퍼스 팀이 별도의 일정(출발 일자가 같을 수 있음)으로 문화탐방을 수행해야 한다. 단, 여행사의 사정상 출발 일정이 같을 수 있으며, 각 캠퍼스 팀이 동일한 숙박 호텔을 이용하는 경우도 가능하나 사전에 협

의한다. 그러나 전문 TC(국외여행인솔자) 및 전용버스는 캠퍼스별로 별도로 운영한다.

제6조(항공편) 항공편은 인천공항과 같이 지정한 유럽의 목적지 간 대한항공이 또는 아시아나항공 직항편으로 한다. 다만, 제5조의 문화탐방 일정에 따라 출국 및 귀국의 목적지는 변경될 수 있다.

제7조(제공 버스) 문화탐방 일정 중 버스 이용 구간에 제공되는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출고 2년 이내의 장거리 전용 버스(LDC) EURO 6 이상 차량으로 하며,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되더라도 모든 전용버스는 캠퍼스별로 별도의 버스를 운행해야 한다.
2. 입석 및 보조좌석 사용은 불가하며, 참가자 수에 맞춰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를 갖추어야 한다.
3. 현지에서 버스가 고장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대체 차량을 제공하여 문화탐방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운전기사는 해당 차종의 면허를 보유하고 운전경력 5년 이상인 자로, 문화탐방 기간 동안 최적의 동선을 운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을은 운전기사의 건강, 신원 및 작업 규율 준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숙소) ①각 방문 지역의 숙소는 4성급 이상 호텔로 선정해야 한다.

- ②숙소는 유흥가, 공사장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인근이 아닌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 ③캠퍼스별 참가자 전원이 동시에 숙박할 수 있어야 하며, 숙소(객실)는 2인 1실로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솔 교직원의 경우 2인실을 단독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다.

제9조(식사) 문화탐방 기간 중 조식은 숙박에서 제공하는 호텔식으로 한다. 중식과 석식은 참가자가 각자 부담한다.

제10조(국외여행인솔자) ①을은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외여행인솔자를 자연캠퍼스 및 인문캠퍼스에 각각 1명씩 배치하여야 한다. 배치된 국외여행인솔자는 문화탐방 출발(인천국제공항)부터 귀국(인천국제공항)까지 원활한 진행을 책임진다.

1. 만 45세 이하의 신체 건강하며,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패키지 상품을 제외한 유럽 자유배낭여행 인솔 경험자
3. 해당 지역에서 최근 3년간 3회 이상 인솔 경험이 있는 자 (출입국증명서 원본 제출)
4. 관광통역안내사 또는 국외여행인솔자(TC) 자격증 소지자(자격증 사본 제출)

5. 영어 및 현지어에 능통한 자

6. 행사 관련 지역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지식 보유자

②국외여행인솔자는 문화탐방 기간 동안 국가 및 도시 간 이동 시 기차 좌석, 전용버스, 숙소 등의 예약 생성, 상태 확인 및 변경 등 문화탐방 진행과 관련된 모든 행정 업무를 담당하며, 각종 사고 발생 시 대응 및 처리를 책임진다.

③국외여행인솔자는 개인 일정을 가져서는 안 되며, 인솔 교직원의 정당한 요구와 상황에 따른 판단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여행 중심지에서 학생들의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학생들을 존중하여 대해야 한다.

④국외여행인솔자는 학생들과의 개별 모임을 갖지 않아야 한다.

⑤국외여행인솔자는 학생 공동경비 사용 후 즉시 그 내역을 인솔 교직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해외여행자보험) 을은 참가자를 위한 해외여행자보험을 다음과 같이 가입하여야 한다.

(단위: 천원/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책임	특별비용	휴대품	항공기 납치
	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	사망	치료실비				
금액	30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	1,400

제12조(안전 배려 의무) ①을은 참가자에게 문화탐방 국가 및 문화탐방지에서의 안전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②을은 불의의 사고나 환자가 발생할 경우, 갑의 인솔 교직원의 지시에 따라 인근 병원을 통해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을의 귀책으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진다.

제13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 시각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최초 출발지로 돌아오는 운송수단의 도착 시각으로 한다.

제14조(문화탐방 일정 변경) ①문화탐방 일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변경될 수 있다.

1. 참가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갑이 요청하거나, 현지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인해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여행 조건 변경으로 인해 제4조의 문화탐방 경비에 증감이 발생할 경우,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환급)하여야 한다.

③갑의 귀책사유 없이 당초 계약과 다르게 일정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을은 해당 일정에 상응하는 금액을 갑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15조(을의 책임) 을은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을 또는 그 고용인, 현지 여행사 및 그 고용인이 계약에서 규정한 을의 임무와 관련하여 갑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6조(계약 양도 금지) 을은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현지에서 문화탐방 진행상 부득이한 사유로 갑의 승인을 받아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을에게 있다.

제17조(손해배상) ①여행 시작 이후 을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 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을은 항공기, 버스, 열차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해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을 또는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이 참가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수하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해 갑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갑이 근로자의 파업, 담당자의 범죄행위 등으로 인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지체하게 된 경우, 갑은 그로 인해 을이 입은 손해를 여행 대금의 0.1% 범위 내에서 배상할 수 있다.

⑤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않은 위약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18조(계약의 중도해지) ①천재지변, 항공편 결항, 현지 전염병 발생, 참가자의 안전 보장이 불가능한 상황(테러, 소요사태) 발생, 방문 예정 국가에 대한 외교부의 황색경보 발령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문화탐방이 불가능한 경우, 갑은 을에게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을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②제1항에 따라 여행 출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을은 참가자의 귀국을 위한 절차를 협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 중 을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않은 부분은 갑이 부담한다.

③을이 갑에게 제출한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갑은 을에게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을이 입는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을로부터 이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 제4조에 따른 문화탐방 경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만, 이미 지급한 문화탐방 경비(선금 포함)가 있는 경우, 을은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받지 못한 부분을 갑에게 정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 제19조(기타)** ①을은 낙찰 후 10일 이내에 항공 및 숙소 예약 확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을은 낙찰 후 즉시 갑의 담당부서와 현지 숙소 및 일정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본 과업지시서 각 조항의 해석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갑의 해석 및 결정에 따른다.

[별첨 1]

2025학년도 하계 전공학문연계 해외문화탐방 일정표

구분	탐방지역	세부사항
1일차	인천→영국(런던)	· 인천 국제공항 출발, 런던 국제공항 도착 · 런던 국제공항에서 전용버스 이용 숙소 이동
2일차	영국(런던)	· 호텔 조식 후 전일 시내 자유탐방
3일차	영국(런던)	· 호텔 조식 후 전일 시내 자유탐방
4일차	영국(런던)→프랑스(파리)	· 호텔 조식 후 이동(유로스타) · 숙소 체크인 및 시내 자유탐방
5일차	프랑스(파리)	· 호텔 조식 후 전일 시내 자유탐방
6일차	프랑스(파리)	· 호텔 조식 후 전일 시내 자유탐방
7일차	프랑스(파리)→스위스(인터라켄)	· 파리 - 스위스 구간 전용버스 또는 TGV 탑승 · 숙소 체크인 및 시내 자유탐방
8일차	스위스(인터라켄)	· 호텔 조식 후 전일 시내 자유탐방
9일차	스위스(인터라켄) 스위스(취리히) 이탈리아(밀라노)	· 취리히 - 밀라노 구간 이동(전용버스 또는 EuroCity) · 숙소 체크인 및 시내 자유탐방
10일차	이탈리아(밀라노) 이탈리아(베네치아)	· 호텔 조식 후 전용버스 이용 이동 · 숙소 체크인 및 시내 자유탐방
11일차	이탈리아(베네치아) 이탈리아(피렌체)	· 호텔 조식 후 전일 시내 자유탐방 · 버스 또는 열차 이동 · 숙소 체크인 및 시내 자유탐방
12일차	이탈리아(피렌체) 이탈리아(로마)	· 전용버스 또는 고속열차(Frecciarossa) 로 이동 · 숙소 체크인 및 시내 자유탐방
13일차	이탈리아(로마)	· 호텔 조식 후 전일 시내 자유탐방
14일차	이탈리아(로마)	· 로마 호텔에서 전용버스 로 로마 국제공항 이동 · 로마 국제공항 출발→인천으로 출발
15일차	인천	· 인천 국제공항 도착

※ 입찰결과 및 현지 사정에 따라, 갑의 승인하에 일정표 내 도시 및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 모든 전용버스는 캠퍼스별로 개별 운영하며, 통합 운행하지 않는다.

[별첨 3]

선금 이행각서

1. 계약건명:
2. 계약기간:
3. 계약금액: (₩) 일금 원정
4. 선금 신청액: (₩) 일금 원정

상기 선금을 사용함에 있어, 선금 사용계획서에 명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과 손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기수령한 선금을 금융기관 약정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대한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선금을 제3자에게 채권으로 양도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①

명 지 대 학 교 총 장 귀하

[별첨 4]

선금 사용계획서

계약건명:

(단위:원)

구분(항목)	선금 청구액	비고
합 계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명 지 대 학 교 총 장 귀하

[별첨 6]

선금 사용 내역서

(선금 사용후 제출)

계약건명: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분(항목)	선금금 수령 및 사용 내역				비고
	수령액	사용액	사용내역	잔액	
합 계					

당사(사업자)는 상기와 같이 선금 사용 내역을 증빙자료와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붙임 선금 사용 증빙자료(영수증, 입금증, 세금계산서 등)

신 청 인:

주 소:

상 호:

대 표 자:

㉠

명 지 대 학 교 총 장 귀하